

2021년도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상담내용(요약)

(2021. 6월말기준)

순번	상담일시		상담 의뢰자	상담내용		
	일자	시간		분류	문제상황(질의내용)	답변내용(회신내용)
1	2021.6.7	16:30	이○○	외부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부강의 실시 전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한다는 내용이 부서장한테 신고를 하는 사항인가요? ○ 부서장이 신고당사자인 경우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? ○ 월 3회,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실시한 경우 '외부강의 등 승인 요청서'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부강의를 실시하였을 경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(부서장)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 ○ 부서장 등 신고당사자의 경우에도 외부강의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'외부강의 등 신고서'를 작성·보관하여 반기별로 행동강령책임관(감사실장)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 ○ 월 3회,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미리 소속기관의 장(부서장)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